

연구보고서

상속·증여세제 국제비교 및 시사점

2014. 3

||| 목 차 |||

I. 서론	1
II. 우리나라 상속·증여세제 현황	3
1. 과세방식 및 세율 구조	3
2.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	4
3.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	7
III. 주요국의 상속·증여세제 현황	9
1. 독일	9
2. 일본	13
3. 영국	17
4. 국제비교	19
IV. 시사점: 우리나라 상속·증여세제 개선과제	23
1. 가업승계 지원기능 강화	23
2. 상속세 과세방식 및 세율 구조 변경	26
3.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 재설계	27
참고문헌	29

I. 서론

□ 상속·증여세제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

- 상속·증여세는 도입 초기에는 일부 부유층에만 관련된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해 일반 국민들의 관심은 크지 않았음
- 빠른 경제성장으로 개인 및 기업의 자산 규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상속·증여세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
- 특히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창업세대가 세대 교체 중에 있어 가업승계가 경영자의 주요 관심사로 대두하면서 상속·증여세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

□ 상속·증여세는 세수기여도에 비해 높은 누진세율 체계 등으로 인해 경제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세목임

- 우리나라 상속·증여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 2.0%(상속·증여세수 4.0조원)로 낮은 수준이나 최고 50%에 달하는 높은 세율 등으로 개별 납세자에게는 상당한 부담
- 상속·증여세 부담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
 - 상속·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업승계 준비 단계에서는 재투자를 통한 기업 가치 제고보다는 배당을 선호하는 현상 초래
 - 적극적인 투자와 경영으로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 상속·증여시 세부담이 크게 증가
 - 피상속인인 대주주가 사망할 경우 상속세 납부로 인해 상속인들의 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거나 기업의 매각이나 폐업이 유발
 - 개방경제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은 국부의 해외유출을 초래하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잠식할 우려

□ 정부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상속·증여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 중이나 높은 상속·증여세율 체계 등으로 여전히 세 부담이 높은 상황

- 1996년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가업승계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공제 금액을 높이고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
- 2007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생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일부 경감
- 그러나 우리나라 상속·증여세율(50%, 최대주주 주식의 경우 65%)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(직계상속 기준)으로 15년 째 동일한 세율 체계를 유지

□ 상속·증여세 과세 강화를 통해 경제적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회의론이 세계적으로 확산

- 2011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총세수 대비 상속·증여세수 비율 평균은 0.3%이며 GDP 대비 상속·증여세수 비율 평균은 0.1%로 매우 낮아 부의 재분배 효과는 의문시되고 있음

* 우리나라 총세수(국세, 지방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포함) 대비 상속·증여세수 비율은 1.0%이며 GDP 대비 상속·증여세수 비율 0.3%임

□ 이에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상속·증여세제 국제비교를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및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

- 상속·증여세제 과세방식 및 세율 구조,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, 독일, 일본, 영국의 제도 현황을 비교분석한 후 개선과제를 도출

II. 우리나라 상속·증여세제 현황

1. 과세방식 및 세율 구조

□ 우리나라 상속세는 '유산과세방식'을 취하고 있으며, 증여세는 '취득과세방식'을 취하고 있음

-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과세기준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'유산과세방식'임
-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'취득과세방식'임

□ 1997년부터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이 단일화 되었으며 최저 10%부터 최고 50%까지 5단계 누진세율 적용

- 2000년 이후 동일한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구조를 유지
- 현재 최고세율 구간은 '30억 초과'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적용되던 최고세율 구간 '50억 초과' 보다 낮아졌으며, 최고세율은 45%에서 5%p 상승한 50% 적용
- 동일인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 간 누적적으로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

< 우리나라 상속·증여세율 추이 >

1996년 이전		1997년~1999년	2000년 이후
〈상속세〉		과세구간 및 세율 단일화 · 1억원 이하 10% · 5억원 이하 20% · 10억원 이하 30% · 50억원 이하 40% · 50억원 초과 45%	· 1억원 이하 10% · 5억원 이하 20% · 10억원 이하 30% · 30억원 이하 40% · 30억원 초과 50%
5천만원 이하	10%		
2억5천만원 "	20%		
5억5천만원 "	30%		
5억5천만원 초과	40%		
〈증여세〉			
2천만원 이하	10%		
1억5천만원 이하	20%		
3억원 이하	30%		
3억원 초과	40%		

□ 2012년 기준 상속·증여세수는 4.0조로 총세수 대비 비율은 1.18%, GDP 대비 비율은 0.32%임

- GDP 대비 상속·증여세 비율은 2000년 0.16%에서 두 배 가량 증가했으며 2009년부터 증가 추세

< 연도별 상속·증여세수 >

	2008년	2009년	2010년	2011년	2012년	OECD 평균(2011년)
총세수 대비	1.02%	0.89%	1.05%	1.04%	1.18%	0.32%
GDP 대비	0.27%	0.23%	0.26%	0.27%	0.32%	0.12%

* 총세수: 국세, 지방세, 사회보장기여금 포함

* 자료: OECD

2.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

□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‘가업상속공제 제도’ 및 ‘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’를 운영

- 1960~1970년대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창업 1세대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 시작하면서 성공적인 가업승계가 국가 현안으로 대두
- 상속·증여세가 중소·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걸림돌로 작용함에 따라 상속 및 증여를 구분하여 세부담 경감 지원

□ 가업상속공제 제도

*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

- 1997년부터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도입(1996년 12/30,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)하였으나 2007년까지는 가업상속공제금액이 최대 1억원에 불과하여 효과가 미흡
- 이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차례 세법 개정을 통해 공제 대상,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요건을 개선

- 2014년부터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및 매출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가업상속에 대해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별 200~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재산의 100%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
 - * 가업: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
 - 법인 기업인 경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하여 지분율이 50%(상장기업의 경우 30%) 이상인 경우임
 - * 가업상속재산
 - ① 개인기업: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, 건축물,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
 - ② 법인기업: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·출자지분(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사업용 자산 비율 제외)
 - *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별 공제 한도 차등 적용
 - (10년 이상~15년 미만) 200억원, (15년 이상~20년 미만) 300억원, (20년 이상) 500억원
 -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 영위 기업에 한해 적용
 - * (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)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열거
 - * (중소기업기준법) 중소기업 업종 제한 없음

< 연도별 가업상속공제 제도 >

	2008년	2009~2010년	2011년	2012년	2013년	2014년
공제대상	중소기업	(좌동)	· 중소기업 · 매출 1.5천억원 이하 중견기업	(좌동)	· 중소기업 · 매출 2천억원 이하 중견기업	· 중소기업 · 매출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
공제율	20%	40%	(좌동)	70%	(좌동)	100%
공제한도	30억원	60~100억원	(좌동)	100~300억원	(좌동)	200~500억원

- 가업상속 이후 10년 간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의무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금액의 70~100%에 대해 상속세 추징
 - * 사후관리 위반 기간 등에 따라 추징율 차등 적용

- 가업용 자산의 20%(5년 내는 10%) 이상 처분한 경우
-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
 -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, 또는 가업을 1년 이상 휴·폐업하는 경우
-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. 다만 상속받은 주식의 물납으로 인해 지분이 감소한 경우 제외
- 고용평균의 100~120%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
 - 상속 후 10년 간 정규직근로자수 평균이 상속 개시 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100%(중견기업은 120%)에 미달하는 경우
- * 매년 말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은 상속 개시 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80% 이상이어야 함

□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

- *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6
- 중소·중견기업 경영자 생전에 자녀에게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08년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도입(2007년 12/31, 조세특례제한법 개정)
-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1명이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
 -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 영위 기업에 한해 적용
 - * 주식 증여에 대한 과세특례로 개인사업체는 적용되지 않음
 - * 가업승계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함
- 증여재산가액(30억원 한도)에서 5억원 공제 후 10%의 특례세율을 적용해 증여세 과세
 - * 일반 증여재산은 5천만원 공제 후 10~50% 증여세율 적용
 - * 30억원 초과 금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0~50%를 적용하여 증여세 계산

-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증여재산가액은 기한에 관계없이 피상속인 사망 시 모두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
 - * 일반 증여재산은 피상속인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
-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일몰제로 도입되었으며 2010년 말 일몰이 한 차례 연장(2010년 12/27 개정)된 후 올해부터 일몰을 폐지하고 상시 운영(2014년 1/1 개정)
 - 한도, 공제금액, 특례세율 등은 도입 이후 동일하게 적용
- 가업주식의 증여일로부터 10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업승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가업 주식 전액을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기본세율(10~50%)로 다시 부과
 - 수증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
 -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
 - 주식을 수증받은 수증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

3.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

□ 최대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(이하 '최대주주 등')의 경영권프리미엄을 고려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한 후 상속·증여세를 과세

*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

-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해 지분율과 주식발행기업 규모에 따라 10~30%를 할증평가함
 -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구분 없이 적용
 -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매사례가액, 순자산가치,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 등 평가방법에 관계없이 적용

<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률 >

지분율	중소기업	일반기업
50% 이하	10%	20%
50% 초과	15%	30%

* 기업 규모 구분 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따름

- 다만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'14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

*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

*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을 목적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할증평가 적용 유예

Ⅲ. 주요국의 상속·증여세제 현황

1. 독일

(1) 과세방식 및 세율 구조

□ 독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'취득과세방식'을 취하고 있음

-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상속재산을 과세기준으로 하여 상속인별 누진과세함
- 따라서 각 상속인별로 상속받는 재산가액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
-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클 경우 상속받는 재산이 미미한 상속인에게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우리나라와 대비됨

□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구조는 동일하며 피상속인과 상속인,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차등세율 적용

- 피상속인과 상속인,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3개의 과세등급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차등 적용
 - 독일의 최고 상속세율은 우리나라와 동일한 50%이나 이는 피상속인과 상속인, 증여자와 수증자 간 혈연관계가 없거나 4촌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
 -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배우자, 직계비속 등인 일반적인 경우에는 최고세율이 30%에 불과함
 - 가족의 부를 가족의 구성원이 승계하는 것은 일종의 자연권으로 보아 낮은 세율을 적용

< 독일의 상속·증여세율 >

(단위: 유로, %)

과세표준	I 등급	II 등급	III 등급
75,000	7	15	30
75,000~300,000	11	20	30
300,000~600,000	15	25	30
600,000~6,000,000	19	30	30
6,000,000~13,000,000	23	35	50
13,000,000~26,000,000	27	40	50
26,000,000~	30	43	50

- * I 등급: 배우자, 직계비속(손자 및 양자 포함), 직계존속(상속만 포함), 등록된 동성파트너
 II 등급: 형제자매, 조카, 양부모, 사위·며느리, 배우자의 부모, 이혼한 배우자, 직계존속(증여만 포함)
 III 등급: I, II 등급 외의 자간 상속 및 증여
 * 자료: 주요국의 상속·증여세제 현황 및 최근 동향(한국조세재정연구원, 2012년)

□ 2012년 기준 총세수 대비 상속·증여세수 비율은 0.43%이며
 GDP 대비 비율은 0.16%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나
 OECD 평균에 비해서는 높음

< 연도별 상속·증여세수 >

	2008년	2009년	2010년	2011년	2012년	OECD 평균(2011년)
총세수 대비	0.53%	0.51%	0.49%	0.44%	0.43%	0.32%
GDP 대비	0.19%	0.19%	0.18%	0.16%	0.16%	0.12%

- * 총세수: 국세, 지방세, 사회보장기여금 포함
 * 자료: OECD

(2)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

□ 독일은 가업승계에 대해 상속과 증여의 구분 없이 동일한
 세제지원 적용

○ 가업승계 후 경영기간과 고용유지 규모에 따라 가업승계재산
 의 85~100%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

- * 기업 규모, 업종 및 선대경영자 가업영위기간과 관계없이 공제 적용
 * 가업승계재산: 사업용 자산 또는 상장·비상장 주식(지분율 25% 이상)

- 과거에는 공제율이 35%였으나 2008년 12월 5일 상속세개혁법을 통해 공제율을 85%~100%로 대폭 확대(2009년 1/1 시행)

□ 가업승계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획득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주어지는데 한번 정해진 선택은 구속적인 것으로 사후변경이 불가능함¹⁾

- 선택 1 : 85% 공제 요건
 - (사업의 계속성 요건) 승계 받은 사업을 5년 간 계속
 - (고용의 계속성 요건) 가업승계 후 5년 간 급여총액은 가업승계가 이루어진 과세연도 급여총액의 400% 이상이어야 함
 - (사업자산 비율요건) 임대자산, 투자자산 등 비사업용자산 비율이 50% 이하여야 함
- 선택 2 : 100% 공제 요건
 - (사업의 계속성 요건) 승계 받은 사업을 7년 간 계속
 - (고용의 계속성 요건) 가업승계 후 7년 간 급여총액은 가업승계가 이루어진 과세연도 급여총액의 700% 이상이어야 함
 - (사업자산 비율요건) 임대자산, 투자자산 등 비사업용자산 비율이 10% 이하여야 함
- 사후관리
 - 당해 사업을 법정기간(5년 또는 7년) 내에 양도하는 등 유지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여받은 세제혜택을 시간적으로 안분하여 사후추징하게 되며, 급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급여총액이 미달한 부분만큼 안분하여 축소함

1) 박종수, 상증세법상 가업승계 지원세제의 개선방안-영국과 독일 세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, 제26권 제3호, 세무학연구, 한국세무학회, 2009, 57면.

(3)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

□ 독일은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가 없으며 소액주주 주식에 대해 할인평가함

- 자산, 수익 전망 등을 기초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10% 할인평가
 - 자산, 수익 전망 등에 기초한 주식 평가는 대주주를 전제로 주식을 평가한 것으로 봄
 - 지분이 10% 이하인 주주, 다른 지분소유자가 50% 이상의 지분을 갖는 경우 10~25%의 지분을 소유하는 지분소유자는 회사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10% 할인하여 평가

2. 일본

(1) 과세방식 및 세율 구조

□ 일본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'취득과세방식'을 취하고 있음

- 다만 일본의 상속세제는 취득과세방식을 기초로 하되 유산과세 방식이 일부 가미된 형태임
 - 우선적으로 실제 유산분할과 관계없이 법정상속인별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(상속인별) 상속세를 계산하여 상속세 총액을 산정
 - 이후 상속세 총액을 실제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상속인별 산출세액을 계산

□ 일본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구분하여 별도의 세율 구조 적용

-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10~50%의 6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되 과세표준 구간을 차등화
- 상속재산 대비 증여재산에 대해 급격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본의 증여세 산출구조는 우리나라와 같은 누적과세 방식이 아닌 역년과세 방식이므로 기간별 분산 증여를 통해 세부담을 낮출 수 있음
 - * 역년과세: 그 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후 기초공제금액(110만엔)을 공제하고 10~50%의 누진세율을 적용
 -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1년 간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계하여 과세
 - * 과거에는 동일인에게 3년 이내에 재차 증여받는 경우 누적 합산과세하였으나 1975년 제도 폐지
- 아울러 65세 이상 되는 부모가 20세 이상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'역년과세'와 '상속 시 정산과세'를 선택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증여세 부담을 완화
 - * 고령자의 보유자산을 조기에 차세대로 원활하게 이전하여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3년 '상속 시 정산과세 제도' 도입

- 증여자별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후 복수연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2,500만엔 한도의 특별공제금액을 차감하고 20%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함
- 이후 증여자 사망일에 당해 증여재산 가액과 상속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증여일에 납부했던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

< 일본의 상속·증여세율 >

(단위: 엔, %)

상속세		증여세	
과세표준	세율	과세표준	세율
10,000,000	10	2,000,000	10
10,000,000~30,000,000	15	2,000,000~3,000,000	15
30,000,000~50,000,000	20	3,000,000~4,000,000	20
50,000,000~100,000,000	30	4,000,000~6,000,000	30
100,000,000~300,000,000	40	6,000,000~10,000,000	40
300,000,000~	50	10,000,000~	50

* 자료: International Estate and Inheritance Tax guide 2013(Ernst&Young)

□ 2011년 기준 일본의 총세수 대비 상속·증여세수 비율은 1.09%이며 GDP 대비 비율은 0.31%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

< 연도별 상속·증여세수 >

	2008년	2009년	2010년	2011년	2012년	OECD 평균(2011년)
총세수 대비	1.04%	1.06%	0.94%	1.09%	-	0.32%
GDP 대비	0.30%	0.29%	0.26%	0.31%	0.32%	0.12%

* 총세수: 국세, 지방세, 사회보장기여금 포함

* 2012년 총세수 대비 상속·증여세수 비율 자료 없음

* 자료: OECD

(2)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

□ 일본은 가업승계에 대해 상속·증여세 납부유예 후 사후관리 요건 이행 시 유예세액을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

-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「중소기업에 있어서 경영승계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」 제정(2008년)
- 동 법률에 따라 가업승계에 대한 세부담이 대폭 완화

□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

-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로서 지분율이 50%를 초과하는 비상장주식을 상속할 경우 비상장주식가액의 80%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납세유예한 후 일정 기간 고용과 경영의무 등을 이행하면 유예세액 면제
 - 상속 이후 5년간 상속인이 대표자 유지, 고용의 80% 이상, 지분 100%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이후 사망할 때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함
 - 상속 이후 5년간 상속인이 대표자 지위를 상실하는 등 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조세지원 전체를 취소하나 5년 이후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할 경우에는 주식 양도 비율에 따라 유예세액을 납부
 - 비상장 중소기업(지분율 50% 초과)만을 조세지원 대상으로 하며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음
 - * 자산관리회사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체 업종에 대해 지원
 - 승계대상 기업 주식 총수의 3분의 2까지 상속세 납세유예가 가능하며 금액적 한도 제한은 없음

□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납세유예 특례

- 비상장 중소기업주식(지분율 50% 초과)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할 경우 증여세 전액을 납세유예한 후 증여자 사망 시 증여세 유예세액을 면제하되 가업승계주식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로 과세함. 이 경우 증여세 납세유예 특례를 적용받은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납세유예 제도를 적용할 수 있음
- 비상장주식 증여 후 5년 내 경영승계수증자가 대표권을 상실하거나 특례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 수가 80% 미만이 되면 증여세 유예세액 전액을 납부해야 함
- 5년 이후 경영승계수증자가 특례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양도한 비율에 따라 증여세 유예세액을 납부해야 함
- 승계대상 기업 주식 총수의 3분의 2까지 증여세 납세유예가 가능하며 금액적 한도 제한은 없음

(3)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

□ 일본은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가 없음

- 비상장주식 평가 시 지배주주 주식과 그 외 주식에 대해 평가방식을 달리함으로써 경영권프리미엄을 반영
- * 지배주주: 과세시기 현재 주주 1인 및 그와 동족 관계에 있는 자(특수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)가 30% 이상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경우 당해 주주 및 그와 동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
- 지배주주 주식은 순자산가액, 유사상장회사 주가 등을 기초로 평가하며 소액주주 주식은 배당금을 기초로 평가
- 배당금으로 평가한 소액주주 주식 평가액이 지배주주 주식 평가액보다 클 경우 지배주주 주식 평가액을 한도로 함. 즉 소액주주 주식평가액은 지배주주 주식보다 낮게 평가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소액주주 주식에 대해 할인평가하는 것과 유사

3. 영국

(1) 과세방식 및 세율 구조

- 영국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상속세의 경우 '유산과세방식'을 취하고 증여세의 경우 '취득과세방식'을 취함
- 영국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구분하여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상속세에 비해 증여세 부담을 완화
 - 상속재산이 면세점(325천파운드)을 초과하는 경우 40% 단일세율로 상속세 부과
 - 2012년 4월부터 상속재산 중 10% 이상을 기부하면 적용세율을 40%에서 36%로 인하
 - 상속재산은 과거 7년 이내 발생한 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산출하되 기간에 따라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비율을 경감
 - *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비율: (3년 이내) 100%, (3~4년) 80%, (4~5년) 60%, (5~6년) 40%, (6~7년) 20%
 - 증여재산이 면세점(325천파운드)를 초과하는 경우 20%의 단일세율로 증여세 부과
- 2012년 기준 총세수 대비 상속·증여세수 비율은 0.58%이며 GDP 대비 비율은 0.2%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나 OECD 평균보다는 높음

< 연도별 상속·증여세수 비율 >

	2008년	2009년	2010년	2011년	2012년	OECD 평균(2011년)
총세수 대비	0.63%	0.50%	0.52%	0.54%	0.58%	0.32%
GDP 대비	0.23%	0.17%	0.18%	0.19%	0.20%	0.12%

* 총세수: 국세, 지방세, 사회보장기여금 포함

* 자료: OECD

(2)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

□ 영국은 가업승계에 대해 상속과 증여의 구분 없이 기업자산 공제 제도 운영

- 최소 2년 이상 피상속인(증여자)이 사업 목적으로 소유한 중요기업자산에 대해 자산종류별로 50%~100%를 한도 제한 없이 과세가액에서 공제
 - 상장주식(지분율 50% 초과), 가업용 토지·건물·기계·설비: 50% 공제
 - 비상장주식: 100% 공제
 - 업종 제한 없이 공제 적용
- 수증자는 기업자산 증여 후 7년 내에 증여자 사망 시까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유지한 경우에 한해 기업자산공제 적용

(3)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

□ 영국은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가 없음

- 소액주주 주식에 대해서는 할인이 가능하나 할인 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

4. 국제비교

□ 상속세제 전반 비교

- 우리나라 상속세제는 유산세 과세방식, 높은 세율,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등으로 주요국에 비해 엄격
-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%이며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고려하면 최고 65%에 달함
- 또한 우리나라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취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이 큰 경우 상속인별 실제 상속받는 재산의 크기와 상관 없이 모두 높은 세율이 적용

< 상속세제 국제비교 >

	한국	독일	일본	영국
과세방식	유산세	취득세	취득세	유산세
최고세율	50%	· 배우자, 직계존비속: 30% · 형제자매: 40% · 기타: 50%	50%	40%
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	30억원	26백만유로(380억원)	3억엔(31억원)	325천파운드(6억원)
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	10~30%	없음	없음	없음

□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

-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온 결과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율은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이나 공제한도는 낮은 편
-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율은 100%로 독일(85~100%), 일본(80%), 영국(50~100%)과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
-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를 200~500억원으로 차등적용함. 반면 독일과 영국은 공제한도가 없으며 일본은 금액적 한도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승계대상주식총수의 3분의 2까지 세제지원을 적용함에 따라 주식가액이 높은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음

-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세제지원 적용대상이 제한적
 -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영위, 조세특례제한법상 열거된 업종으로 적용대상을 제한
 - * 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 중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중소기업업종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적용
 - * 보안시스템 서비스업,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, 택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업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
 - 독일과 일본은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은 피상속인이 2년 이상 경영한 경우 지원
 - 독일과 영국은 업종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업종 제한을 하되 자산관리회사 등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을 규정하고 있음(포괄주의 방식)
-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후 사후관리기간은 우리나라(10년)가 독일(5~7년), 일본(5년) 등 주요국에 비해 장기임

□ 가업 사전승계(증여)에 대한 세제지원

-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가업승계주식 증여에 대한 세제지원 폭이 좁음
 - 우리나라는 가업승계주식 증여에 대해 주식가액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% 단일세율 적용함. 증여세 특례대상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
 - 독일과 영국은 가업승계에 대해 상속과 증여 구분 없이 동일한 세제지원을 적용
 - 독일은 가업증여재산의 85~100%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영국은 가업증여재산의 50~100%를 과세가액에서 공제
 - 일본은 가업승계주식 증여에 대해 증여에 전액을 납세유예한 후 증여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며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

<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국제비교 >

구분		한국	독일	일본	영국
적용 대상	규모	· 중소기업 · 중견기업 (매출 3천억원 미만)	· 제한 없음	· 중소기업	· 제한 없음
	상장 여부	· 상장주식(30% 이상) · 비상장주식(50% 이상)	· 상장주식(25%이상) · 비상장주식(25% 이상)	· 비상장주식(50% 초과)	· 상장주식(50%이상) · 비상장주식
	업종	· 조세특례제한법상 열거된 업종 (열거주의)	· 업종 제한 없음	· 자산관리회사 등 일부 업종 제외 (포괄주의)	· 업종 제한 없음
	피상속인 최소사업 영위기간	· 10년	· 제한 없음	· 제한 없음	· 2년
세제 지원	공제율	· 100%	· (5년간 유지)85% · (7년간 유지)100%	· 80% * 납세유예 후 요건 충족 시 면제	· (상장주식)50% · (비상장주식)100%
	공제한도	· 200~500억원 * 피상속인 사업영위기간별 차등적용	· 한도 없음	· 승계대상 기업 주식 총수의 3분의 2까지 세제지원 적용	· 한도 없음
사후관리		· 10년 간 사후관리 · 10년 간 고용평균 100%(중견120%) 이상 · 가업용 자산 80% 이상 유지 (5년간은 90% 이상 유지) · 상속인 지분 보유 · 상속인 가업 종사 (대표이사 유지)	· 5년(7년) 간 지급임금합계가 상속당시 임금합계의 400%(700%) 이상	· 5년 간 고용의 80% 이상 유지 · 5년 간 상속인이 대표이사 유지 · 상속인 사망 시까지 지분 보유	· 자산·고용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 없음

< 가업 사전승계(증여)에 대한 세제지원 국제비교 >

구분		한국	독일	일본	영국
적용 대상	규모	· 중소기업 · 중견기업 (매출 3천억원 미만)	· 제한 없음	· 중소기업	· 제한 없음
	상장 여부	· 상장주식(30% 이상) · 비상장주식(50% 이상)	· 상장주식(25%이상) · 비상장주식(25% 이상)	· 비상장주식(50% 초과)	· 상장주식(50%이상) · 비상장주식
	업종	· 조세특례제한법상 열거된 업종 (열거주의)	· 업종 제한 없음	· 자산관리회사 등 일부 업종 제외 (포괄주의)	· 업종 제한 없음
	증여자 최소사업 영위기간	· 10년	· 제한 없음	· 제한 없음	· 2년
세제지원		· 5억원 공제 후 10% 단일세율 적용 · 주식가액 30억원 한도까지 특례 적용 · 상속 시점에서 정산	· (5년간 유지)85% 공제 · (7년간 유지)100% 공제 · 한도 없음	· 증여세 전액 납세유예 · 승계대상 기업 주식 총수의 3분의 2까지 세제지원 적용 · 상속 시점에서 정산	· (상장주식)50% 공제 · (비상장주식)100% 공제 · 한도 없음
사후관리		· 5년 내 수증자 대표이사 취임, 10년까지 대표이사 유지 · 10년 간 주식 보유	· 5년(7년) 간 지급임금합계가 증여 당시 임금합계의 400%(700%) 이상	· 5년 간 고용의 80% 유지 · 5년 간 수증인이 대표이사 유지 · 수증자 또는 증여자 사망 시까지 주식 보유	· 7년 내 증여자 사망 시까지 주식 보유

IV. 시사점: 우리나라 상속·증여세제 개선과제

1. 가업승계 지원기능 강화

□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는 장기적으로 고용 확대, 경제 역동성 제고, 부가가치 창출 증대 등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

- 가업승계는 단순히 창업자 일가의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계속기업(going concern)의 근본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확대를 통해 사회 전체를 위한 이익을 창출
-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은 단기적으로는 상속·증여세수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나 성장한 기업이 납부할 법인세, 근로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을 누적하면 가업승계 지원을 통한 세수감소 규모를 상회할 수 있음²⁾

(1)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세유예 제도 도입

□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경감 폭이 낮은 수준

- 선대경영자 생전에 자녀에게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도입했으나 한도(30억원)가 낮아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기에 미흡
 -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식가액에 대해서는 최고 50%의 일반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생전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작용
- * 상속과 달리 증여의 경우 비상장주식 물납 금지

2) 최근 한국세무학회의 연구에서 가업상속 업체당 평균 상속세는 92억 4,500만원이지만 이를 면제하더라도 상속 후 약 3년이 지나면 법인세, 근로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 누적 납부액이 91억 8,800만원으로 상속세 면제액을 상회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었다. 즉, 1회성 세수인 상속세에 비해 법인세 등은 매년 징수되는데다 세수 비중이 22.8%에 달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징수하면서 중소(중견)기업들의 경영리스크를 악화시키기보다는 상속세를 면제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세수의 확보 측면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.(경제포럼, 가업상속세 전액 면제-3년이면 납세로 상쇄, 2013년 8월 2일 기사 참조.)

- 독일과 영국은 상속 전 가업승계주식에 대해 가업상속과 동일한 세제지원을 적용하고 있고 일본은 선대경영자 사망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를 유예하고 있음

□ 상속 전 가업승계주식에 대해 증여세 납세유예 후 상속 시 정산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선대 경영자 생전에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경제 활력 제고

- 상속 전 가업승계주식에 대해 증여세 납세유예 후 상속 시 증여세 유예세액은 면제하고 가업승계주식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로 정산(요건을 갖춘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)
 - 상속 전 가업승계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통해 가업승계시기에 대한 선택의 폭 확대
 - 창업1세대가 가지고 있는 경영노하우를 생전에 자녀에게 전수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 발전과 종업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경제 활력 제고
 - 증여시점부터 상속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수익 만큼의 세수손실이 발생하므로 국가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

□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세유예가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서 과세특례 적용 한도액을 확대함으로써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부담 완화

(2)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세제지원 차등화 개선

□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달리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가업상속공제한도를 달리 적용함으로써 세제지원 차등화

-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에 대해 가업상속재산의 100%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를 차등적용함에 따라 규모가

큰 기업은 상대적으로 불리

*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한도

· (10~15년) 200억원, (15~20년) 300억원, (20년 이상) 500억원

- 독일과 일본은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영국은 2년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은 수준
- 독일, 일본, 영국 모두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세제지원함. 다만 독일은 가업상속 후 가업유지기간, 고용창출정도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율을 차등적용하고 영국은 가업상속자산 종류에 따라 공제율 차등적용
- 독일과 영국은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없으며, 일본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승계대상기업주식총수의 3분의2까지 세제지원 적용

□ 기업의 영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과거 업력보다는 미래 성장가능성이 더 중요한 만큼 업력과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한도를 적용하고 업력 요건도 완화

-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여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고용의 유지확대를 도모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
- 요건을 충족한 가업상속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세제지원하는 미래 지향적 제도로 전환

(3) 가업승계 지원 업종 제한 완화

□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가업승계 지원 대상 업종을 엄격하게 제한

-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열거되지 않은 업종은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음(열거주의 방식)
 - 현행법상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졸업기업(매출액 3천억원 미만)에 대해 부여되는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업종을 제한

- * (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)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열거
- * (중소기업기준법) 중소기업 업종 제한 없음
-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업종(보안 시스템 서비스업,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, 조정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, 택배업 등)은 가업승계 적용대상에서 제외
- 독일과 영국은 가업승계 세제지원에 대한 업종 제한이 없으며 일본은 자산관리회사 등 세제지원에서 배제되는 업종을 열거(포괄주의 방식)

□ 가업승계 세제지원 대상 업종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

- 일본과 같이 가업승계 세제지원 배제 업종을 규정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서비스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고용과 내수성장 도모
- * 부동산임대업, 유흥주점 등과 같이 가업승계와 고용확대의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는 업종에 대해서만 가업승계 세제지원 배제
- 이는 정부의 서비스업 선진화, 고용률 70% 달성 등 주요 정책과제 방향성에도 일치

2. 상속세 과세방식 및 세율 구조 변경

□ 우리나라는 독일, 일본 등 상속세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유산과세방식으로 상속세를 운영

- 우리나라, 미국, 영국은 유산과세방식으로 상속세를 운영하나 그 외 대부분의 국가는 취득과세방식으로 상속세 운영

□ 상속세를 유산과세방식에서 취득과세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공평과세 및 부의 분산 효과를 제고

- 유산과세형은 상속인 각자의 담세력에 대응하지 못해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되며 부의 분산 유도 효과가 없음

-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과세단위로 상속세를 계산할 경우 상속인 각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액에 상관없이 동일한 누진세율이 적용된 세부담을 지게 됨
- 상속세 과세 근거가 상속인의 무상 재산취득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취득과세 방식이 과세 근거에 보다 부합
- 또한 상속세의 취득과세방식 변경을 통해 현행 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방식과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음

□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독일식 세율 구조로의 변경 검토

- 상속세를 취득과세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
- 가족의 부를 가족의 구성원이 승계하는 것은 일종의 자연권에 해당하므로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

3.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 재설계

□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달리 최대주주 주식 상속·증여에 대해 일률적으로 할증평가함에 따라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

-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현재 10~15% 할증 적용이 유예되나 올해 말로 일몰이 종료
- 매출액 1천5백만원 이상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대기업과 동일하게 20~30% 할증이 적용되어 상속·증여세율이 최고 65%에 달함
- *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나 직전3개연도 매출액 평균이 1천5백만원 이상인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중소기업 유예가 적용되지 않음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)

□ **확일적인 할증률 적용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**

- 경영권프리미엄의 가치는 업종, 경영실적, 장래 전망, 사회적 신인도, 경영진의 능력과 성향, 상장 여부 등 기업의 제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지분율을 기준으로 확일적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
- 특히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순자산가치 등에 기초하여 평가할 경우 이미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증평가를 적용함에 따라 이중적으로 할증되는 경우가 있음
 - 독일은 순자산가치 등을 기초로 평가한 주식가액은 회사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 주식 가치라고 보고 소액주주 주식에 대해서는 할인
 - 일본은 지배주주 주식과 그 외 주식에 대해 평가방법 자체를 달리 적용함으로써 경영권프리미엄을 반영

□ **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 재설계를 통해 조세 제도 합리화**

- 증권시장 시세가액이나 소액주주 주식의 매매사례가액 등 경영권프리미엄이 반영되지 않은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최대주주 주식을 평가할 경우에만 할증평가 적용
- 할증평가를 할 경우 경영권프리미엄의 실제 가치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일률적인 할증률 적용 대신 적절한 평가방법을 모색
 - 단기적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일몰 제한 없이 할증 평가를 배제하고 대기업의 경우 탄력적 할증률을 적용하도록 개선

[참고문헌]

- 국중호, 「주요국의 조세제도 - 일본 편」, 한국조세연구원, 2009.
- 김진 등, 「주요국의 가업상속세제 및 정책적 시사점」, 한국경제연구원, 2010.
- 박종수, 상증세법상 가업승계 지원세제의 개선방안-영국과 독일 세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, 제26권 제3호, 세무학연구, 한국세무학회, 2009.
- 박상우, 정래용, 상속·증여세제의 구조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, 제1권 제1호, 연세세계기업법연구, 2009.
- 송원근 등, 「주요국의 상속·증여세 최근 동향 및 시사점」, 한국경제연구원, 2013
- 송창석, 기업의 축적된 기술·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, 경총회보, 한국경영자총협회, 2011.
- 이창민 등, 「상속법 개정의 경제적 영향 분석」, 한양대학교 경영대학, 2013,
- 임승순, 『조세법』, 박영사, 2013.
- 원종학 외 2명, 「주요국의 상속·증여 세제현황 및 최근 동향」, 한국조세연구원, 2012.
- 조봉현, 독일의 가업 상속세 감면제도와 정책적 시사점, 중소기업연구 제35권 제2호, 2013.
- 최명근·조경엽, 「상속세, 경제적 기회균등 보장하는가」, 한국경제연구원, 2006.
- 최명근, 「상속과세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」, 한국조세연구원, 2006